

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서(기관용)

협약주체	위탁기관	기관명	전화번호
		소재지	
		기관장 성명	전화번호
	수탁기관	기관명	전화번호
		소재지	
		기관장 성명	전화번호

*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수탁기관의 기관명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하고, 기관장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합니다.

협약사유	☐ 위탁 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자가 5명 이하 ☐ 위탁 기관의 최근 3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30건 이하 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 ☐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관
------	---

협약기간	* 협약기간은 협약 사유 변동 여부 등에 따라 양 기관이 협의하여 정하여 운영합니다.
------	---

협약내용	* 협약내용은 법 제10조제3항의 업무 범위에서 양 기관이 협의하여 정하여 운영합니다.
------	--

위탁기관 _____(과/와) 수탁기관 _____(은/는)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합니다.

년 월 일

위탁기관의 장 _____(서명 또는 날인)

수탁기관의 장 _____(서명 또는 날인)

첨부서류	협약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서류 * 양 기관은 위 내용 외에 필요한 조건이나 비용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구체적 사항은 별도 서류로 첨부합니다.
------	---